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심현정 의장 발의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심현정 의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2023~2026)에 대한 의정비심의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 수정(안제3조제1항제2호관련)

1) 2023년: 월2,323,000원

2) 2024년 ~ 2026년: 전년도 월정수당 + (전년도 월정수당 ×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 개정은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2023~2026)에 대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지급기준)제1항제2호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연 도	월 정 수 당
2023	월2,323,000원
2024	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월정수당×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5	2024년 월정수당 + (2024년 월정수당×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6	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월정수당×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법제40조제2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위원회의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35조(의정비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위원회는 그 의정비심위원회의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